

1. 개정이유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등록번호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코드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다.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고정기

어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라. 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를 “(자전거등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전거”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을 “전기자전거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구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
2.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

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치 중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야간 운행 시 등화 및 반사경을 갖추는 것

3. 제2호의 장치 성능은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전거의 크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규격(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중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폭(너비): 자전거의 핸들바 등 가장 넓은 부분의 수평거리로 0.7미터 이내

2. 길이: 자전거의 전단에서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로 1.9미터 이내(다만,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유아용 수레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지정된 장소)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

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3.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 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 비교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	시·군·구	코드	시·도	시·군·구	코드	시·도	시·군·구	코드
서울	종로구	A01	전남광주	장흥군	E17	충북	증평군	K07
서울	중구	A02	전남광주	강진군	E18	충북	진천군	K08
서울	용산구	A03	전남광주	해남군	E19	충북	괴산군	K09
서울	성동구	A04	전남광주	영암군	E20	충북	음성군	K10
서울	광진구	A05	전남광주	무안군	E21	충북	단양군	K11
서울	동대문구	A06	전남광주	함평군	E22	충남	천안시	L01
서울	중랑구	A07	전남광주	영광군	E23	충남	공주시	L02
서울	성북구	A08	전남광주	장성군	E24	충남	보령시	L03
서울	강북구	A09	전남광주	완도군	E25	충남	아산시	L04
서울	도봉구	A10	전남광주	진도군	E26	충남	서산시	L05
서울	노원구	A11	전남광주	신안군	E27	충남	논산시	L06
서울	은평구	A12	대전	동구	F01	충남	계룡시	L07
서울	서대문구	A13	대전	중구	F02	충남	당진시	L08
서울	마포구	A14	대전	서구	F03	충남	금산군	L09
서울	양천구	A15	대전	유성구	F04	충남	부여군	L10
서울	강서구	A16	대전	대덕구	F05	충남	서천군	L11
서울	구로구	A17	울산	중구	G01	충남	청양군	L12
서울	금천구	A18	울산	남구	G02	충남	홍성군	L13
서울	영등포구	A19	울산	동구	G03	충남	예산군	L14
서울	동작구	A20	울산	북구	G04	충남	태안군	L15
서울	관악구	A21	울산	울주군	G05	전북	전주시	M01
서울	서초구	A22	세종	세종	H01	전북	군산시	M02
서울	강남구	A23	경기	수원시	I01	전북	익산시	M03
서울	송파구	A24	경기	성남시	I02	전북	정읍시	M04
서울	강동구	A25	경기	고양시	I03	전북	남원시	M05
부산	중구	B01	경기	용인시	I04	전북	김제시	M06

부산	서구	B02	경기	부천시	I05	전북	완주군	M07
부산	동구	B03	경기	안산시	I06	전북	진안군	M08
부산	영도구	B04	경기	안양시	I07	전북	무주군	M09
부산	부산진구	B05	경기	남양주시	I08	전북	장수군	M10
부산	동래구	B06	경기	화성시	I09	전북	임실군	M11
부산	남구	B07	경기	평택시	I10	전북	순창군	M12
부산	북구	B08	경기	의정부시	I11	전북	고창군	M13
부산	해운대구	B09	경기	시흥시	I12	전북	부안군	M14
부산	사하구	B10	경기	과주시	I13	경북	포항시	O01
부산	금정구	B11	경기	광명시	I14	경북	경주시	O02
부산	강서구	B12	경기	김포시	I15	경북	김천시	O03
부산	연제구	B13	경기	군포시	I16	경북	안동시	O04
부산	수영구	B14	경기	광주시	I17	경북	구미시	O05
부산	사상구	B15	경기	이천시	I18	경북	영주시	O06
부산	기장군	B16	경기	양주시	I19	경북	영천시	O07
대구	중구	C01	경기	오산시	I20	경북	상주시	O08
대구	동구	C02	경기	구리시	I21	경북	문경시	O09
대구	서구	C03	경기	안성시	I22	경북	경산시	O10
대구	남구	C04	경기	포천시	I23	경북	의성군	O11
대구	북구	C05	경기	의왕시	I24	경북	청송군	O12
대구	수성구	C06	경기	하남시	I25	경북	영양군	O13
대구	달서구	C07	경기	여주시	I26	경북	영덕군	O14
대구	달성군	C08	경기	양평군	I27	경북	청도군	O15
대구	군위군	C09	경기	동두천시	I28	경북	고령군	O16
인천	제물포구	D01	경기	과천시	I29	경북	성주군	O17
인천	영종구	D02	경기	가평군	I30	경북	칠곡군	O18
인천	미추홀구	D03	경기	연천군	I31	경북	예천군	O19
인천	연수구	D04	강원	춘천시	J01	경북	봉화군	O20
인천	남동구	D05	강원	원주시	J02	경북	울진군	O21
인천	부평구	D06	강원	강릉시	J03	경북	울릉군	O22
인천	계양구	D07	강원	동해시	J04	경남	창원시	P01
인천	서해구	D08	강원	태백시	J05	경남	진주시	P02
인천	검단구	D09	강원	속초시	J06	경남	통영시	P03
인천	강화군	D10	강원	삼척시	J07	경남	사천시	P04
인천	옹진군	D11	강원	홍천군	J08	경남	김해시	P05
전남광주	목포시	E01	강원	횡성군	J09	경남	밀양시	P06
전남광주	여수시	E02	강원	영월군	J10	경남	거제시	P07
전남광주	순천시	E03	강원	평창군	J11	경남	양산시	P08
전남광주	나주시	E04	강원	정선군	J12	경남	의령군	P09
전남광주	광양시	E05	강원	철원군	J13	경남	함안군	P10
전남광주	동구	E06	강원	화천군	J14	경남	창녕군	P11
전남광주	서구	E07	강원	양구군	J15	경남	고성군	P12
전남광주	남구	E08	강원	인제군	J16	경남	남해군	P13
전남광주	북구	E09	강원	고성군	J17	경남	하동군	P14
전남광주	광산구	E10	강원	양양군	J18	경남	산청군	P15
전남광주	담양군	E11	충북	청주시	K01	경남	함양군	P16

전남광주	곡성군	E12	충북	충주시	K02	경남	거창군	P17
전남광주	구례군	E13	충북	제천시	K03	경남	합천군	P18
전남광주	고흥군	E14	충북	보은군	K04	제주	제주시	Q01
전남광주	보성군	E15	충북	옥천군	K05	제주	서귀포시	Q02
전남광주	화순군	E16	충북	영동군	K06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u>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u>)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u>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u> 1.·2. (생략) ② (생략)	제3조의2(<u>자전거등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u>) ① ---- ----- ---- <u>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전거</u> ----- ----- ----.
제4조의3(<u>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u>) <u><신 설></u>	제4조의3(<u>자전거의 안전요건 등</u>)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u>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자전거(전기자전거 제외)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전거를 말한다.</u> 1. 구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u>정하고 있는 구조</u> 2.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u>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u>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
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아 안전확인신
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신 설>

는 장치 중 구동장치, 조향장
치, 제동장치, 야간 운행 시 등
화 및 반사경을 갖추는 것

3. 제2호의 장치 성능은 안전기
준에서 정한 것

② -----

----- 전기자전거란 -----

-----.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전
거의 크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규
격(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중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3
호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폭(너비): 자전거의 핸들바
등 가장 넓은 부분의 수평거
리로 0.7미터 이내

2. 길이: 자전거의 전단에서 후
단까지의 수평거리로 1.9미터

<신 설>

이내(다만,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자전거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유아용 수레를 연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

제4조의4(지정된 장소) 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3.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4.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

	<u>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	---